

국민연금기금의 채권매입방식을 통한 복지투자활성화 방안

National Pension Fund's Welfare Investment through Purchasing Public Bonds of Welfare Purpose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여러 가지 제약조건(수익성 및 신규사업의 개발)으로 인해 복지시설에 대한 직접투자사업을 실현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사업의 범위를 대부사업 또는 시설운영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사업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가능한 대안은 복지사업을 복지투자개념으로 확대하여 채권방식과 같은 간접적 개입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국민연금의 복지투자관련 법적 근거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국민연금법에서 기금의 복지투자근거가 되는 조항은 제 46조, 제 102조, 제 105조이다. 국민연금법시행령은 제 31조, 32조, 74조가 해당된다. 법 제 105조에 의해 만들어진 기금운용지침은 자산배분정책에서 복지사업의 투자한도와 수익률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법 제 46조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복지사업을 크게 대부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분류하고 있다. 법 제 102조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야 하며,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법 제 46조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 있지만 법 제 102조는 복지사업을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 상호 모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은 복지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사업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휴양시설,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와 학자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개인별 대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복지사업은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의 운영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여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신규여유자금의 1% 내외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신규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국고채권수익률이상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제약조건(수익성 및 신규사업의 개발)으로 인해 복지시설에 대한 직접투자사업을 실현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사업의 범위를 대부사업 또는 시설운영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사업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가능한 대안은 복지사업을 복지투자개념으로 확대하여 채권방식과 같은 간접적 개입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현황

1) 기존복지사업현황

복지사업은 신규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나 수익성조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의 한계 등으로 인해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적립금규모는 322조 3,343억 원이고 복지부문 투자규모는 1,294억원으로 적립규모 대비 0.03% 신규여유자금대비 0.3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은 주로 대여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94년 보육시설 대여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신용회복지원사업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각종 대여사업은 낮은 수익성 문제로 신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복지사업의 규모와 비중은 감소하였다. 1995년 3.9%였던 복지사업의 비중은 2010년 0.04%에 그치고 있다.

표 1. 복지투자 규모

(단위: 십억원, %)

연도	적립금 규모	신규여유자금	복지부문규모	적립금 대비비중	신규 여유자금대비비중
2011년	348,867	30,180	108	0.03	0.35
2010년	323,991	30,000	128	0.04	0.42
2009년	277,642	26,000	171	0.06	0.65
2008년	235,424	27,000	184	0.08	0.68
2007년	219,623	30,000	203	0.09	0.67
2006년	189,581	26,000	248	0.13	0.95
2005년	163,923	23,000	301	0.18	1.30
2000년	61,587	11,000	717	1.16	6.51
1995년	16,117	3,500	630	3.91	18.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표 2. 국민연금기금의 대여사업 현황

(2011년 4월말, 억원)

구분	민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생활안정자금	생계자금	신용회복
시행기간	94.10.1~98.12.31	95.2.1~00.12.31	97.2.1~03.12.31	98.5.11~98.12.31	08.6.2~08.12.31
시행체계	공단본부: 기금대여 및 회수 금융기관: 대출(채권보전)			공단직접대부	신용회복위원회에 업무위탁
대부대상	법인, 개인	지자체, 법인, 개인	가입기간 5년 이상 자	사업장가입자였던 자로 소득 업무 미종사자	채무조정 후 전액 상환가능한 자
대부금액 (건수)	6,788 (5,5518)	866 (132)	949 (24,102)	7,854 (237,970)	186 (6,626)
상환금액	6,482	802	949	7,853	25
잔액	306	64	-	1	161
이자	3.78% (수수료 1% 포함)	3.28% (수수료 0.5%포함)	4.9% (수수료 1%포함)	03.4.6 종류	3.4%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2) 신규 복지사업(노후긴급자금대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1년 전국의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복지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자금대중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수급자의 40% 이상이 1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낮은 신용도와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긴급자금대여의 대상은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이며 대부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고한도는 500만원이다. 사업규모는 2012년부터 3년간 18,000명에 대해 총 900억 원을 대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부를 긴급자금용으로 제한하는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일부 가입자의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12년부터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스웨덴의 채권매입방식의 복지투자사례

김상균외(2005)¹⁾에 의하면 2차 대전 이후 스웨덴은 국채매입방식을 통해 주택정책에 연기

1) 김상균 · 안상훈 외(2005),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금 투자를 추진하여 복지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채매입방식은 연기금을 복지사업에 직접 투자한 일본모형과는 비교되는 투자모형의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김상균외(2005)에 따르면 스웨덴은 포괄적인 복지정책으로 잘 알려진 복지국가로서, 복지정책 중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특수요구(special need)에 대한 책임보다는 양질의 수용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목적을 지닌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민적 주택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재정이 국가재정의 막대한 짐이었나,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산물인 연금제도를 이용하여 난관을 극복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1950년대 말에 설립된 스웨덴의 보편연금기금(AP)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대부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적립되는 기금을 투자자금으로 적절하게 제공된 사례이다.

스웨덴은 주택금융의 약 3/4를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택용자는 거의 모두를 채권발행으로 조성하며, 금융기관은 약 60%를 채권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금융채권은 은행과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인수하며 연금기금이 입의계약형태로 신용창출에 참여하고 있어, 채권인수를 둘러싼 발행기관과 인수기관 사이의 마찰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주택시장개입 정책을 펼수 있었던 것은 연기금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김상균외(2005)는

분석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게 연기금을 투입하여 주택 부문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상균외(2005)는 국채매입방식을 통해 여러 복지사업 중 주택사업에서 연기금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스웨덴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연금가입자의 욕구와 가치를 우선 반영하고, 사회 각 계층(저소득층, 노동자 계층, 노인, 여성 등)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투자를 결정하면서도 복지와 더불어 다양한 측면의 정책목표(정치·경제)가 함께 달성되도록 대규모 연기금 투자 결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수단 계획에도 스웨덴 모형에서와 같이 수립한 정책목표(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와 정부정책 수단과 기구들(금융, 택지, 재정, 지방자치단체)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종합적인 합목적성을 지니고 실행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연기금 투자의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입안에서 집행 단계까지 전반적인 추진전략이 주도적이면서도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공적인 부분의 연기금 투자는 시장을 선도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국채매입방식으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증함으로써 정부의 공적정책부문에 연기금 투자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과 연금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사회경제적인 공익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정책결정자와 전국민이 함께 인식하여야 한다.

스웨덴 모형은 일본 공적연금기금의 각종 시설사업에의 직접투자 방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기금의 각종 시설사업은 부동산버블의 붕괴와 민간 부부문과의 경쟁에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거의 모든 시설을 매각하고 시설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스웨덴의 채권투자방식은 주거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펼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4. 채권매입을 통한 복지부문 자금조달가능 강화

국민연금공단은 복지시설의 경우 수익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제약조건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부사업을 통해 복지사업을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직접투자형식으로 추진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간접투자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금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직접투자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직접운영의 경우 복지사업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많은 수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보다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해 자금을 원활하게 제공해 주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복지사업을 규모와 내용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1) 채권투자현황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복지사업에 국

한하지 않고 복지투자로 확대 해석한다면 현재도 국민연금은 복지부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규모는 2012년 5월 기준으로 363조 9,552 억원이며 이 중에서 국내채권투자에 62.5%인 227조 9,188억원을 투자하고 해외채권에 4.33%인 15조 7,886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표 3. 국민연금적립기금의 금융부문투자내역
(단위: 억원, %)

구분	투자금액	투자비중
국내주식	679,023	18.65
해외주식	248,759	6.83
국내채권	2,279,188	62.65
해외채권	157,886	4.33
국내대체투자	148,589	4.08
해외대체투자	126,108	3.46
총계	3,639,552	100

주: 대체투자는 부동산, 사모(Private Equity), 인프라(Infra) 등을 포함함.
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회의자료 2012년 5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채권투자는 크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로 구분된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총 217조 8,050억원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채 44.3%(약 96조 원), 특수채 28.2%(약 61조원), 회사채 26.8%(약 58조원), 지방채 0.6%(약 1조원) 등의 비중을 갖고 있다. 특수채는 크게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으로 나뉘며 총 36개 종목이 발행되어 있다. 그 중에서 통화안정증권이 168조 이상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국민연금기금은 특수채 중에서 통안증권에 10조 4,85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표 4.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현황(2011년 9월 기준)

구분		국민연금기금 채권투자액	비고	
국채		96조 5,396억 원	• 2011년 기금 신규유입규모 : 30조1,805억 원 • 2011년 복지 투자 한도 : 3,018억 원	
지방채		1조 3,362억 원		
특수채	통안증권	10조 4,852억 원		
	공사채	한국장학재단		5,9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5조 2,099억 원
		기타		41조 1,829억 원
	특수채소계	61조 4,680억 원		
회사채		58조 4,612억 원		
채권투자총액		217조 8,050억 원		

주: 1) 기금재정수지(= 자체수입 - (사업비 + 기금운영비)) 기준
 신규여유자금 30조 1,805억원
 2) 복지투자한도액: 신규조성자금 × 1% = 3,018억원
 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채와 지방채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며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수채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국채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현재 총 36개 기관에서 특수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특수채는 크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안증권(통화안정증권)과 공사채로 구분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특수채 보유금액은 61조 4,680억 원으로 총 발행금액인 418조 8,892억 원의 14.59%에 해당한다. 특수채 중에서 보유비중이 가장 큰 것은 통안증권(통화안정증권)으로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특수채권이다. 다음의 <표 5>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특수채의 발행금액과 종목수로 통안증권을 제외한 35개 특수채가 공사채에 해당한다. <표 4>는 35개 공사채 중에서 복지투자 성격에 부합하

는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보유액만을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특수채는 대부분 국가의 인프라확충과 관련이 많은 부분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2) 복지투자 성격의 특수채

공사채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교육복지와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도 복지사업의 목적이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교육복지와 주거복지가 복지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복지사업의 사례를 사회복지사업과 대역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이 가입자와 수급

표 5. 특수채 발행현황(2011년 9월 기준)

종목명	발행금액(백만)	종목수
통화안정	168,300,000	53
산업금융	8,932,058	582
중소기업은행	27,727,923	256
한국전력	21,460,700	142
토지개발	14,850,063	107
도로공사	17,870,435	168
한국가스공사	11,243,450	111
수자원	7,498,032	85
석유공사	100,300	2
석탄공사	350,000	4
주택공사	20,704,078	158
중소기업진흥공단	1,750,000	16
부산교통채권	160,000	6
여수광양만	475,000	5
구조조정	1,520,000	33
자산관리공사	540,000	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3,290,000	15
한국철도시설채권	12,350,000	98
한국주택금융	457,500	10
한국지역난방공사	1,040,180	1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06,970	10
한국철도공사	7,040,385	63
부산교통공사	60,000	6
SH공사	1,199,007	8
전북개발공사	80,000	2
한국산업단지공단	396,562	17
인천항만공사	260,045	5
한국장학재단	5,290,000	48
토지주택	19,506,505	150
한국정책금융공사	26,480,050	203
한국광물자원	400,000	4
산은금융지주	150,000	2
수산금융채권	320,000	5
한국수출입금융	6,100,000	88
농업금융	10,480,000	101
지역난방공사	200,000	2
총계	418,889,243	2,582

자료: KRX 홈페이지

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한국장학재단채권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재단체 발행 및 운용
- ② 학자금 대출
- ③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 ④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⑤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⑦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⑧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프로그램 운영 지원
- ⑩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획사업의 수행
- ⑪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 ⑫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 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업내용을 감안해 볼 때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매입은 교육복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대표적인 복지투자성 채권투자로 구분될 수 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목적은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통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사의 주요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주택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①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통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통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 ②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

- 가 및 실사
- ③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
- 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⑤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3) 기타 복지증진 목적의 지방채투자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지방채 발행대상)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으로 정하고 있다.

- ①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⑤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⑥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채의 발행대상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지방

정부의 채권발행이 거의 지방경제활성화 또는 인프라확충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채권이 발행되고 이러한 채권을 국민연금기금이 매입해 주는 경우 지역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사업의 수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기금운용지침상의 수익률과 투자한도 조건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신규여유자금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는 30조 1,805억 원의 기금이 신규 유입되었으며, 2011년 복지투자의 한도는 3,018억 원이 된다. 한국장학재단채권보유액이 5,900억 원이므로 간접투자를 복지사업으로 분류한다면 이미 복지투자한도인 3,018억 원을 초과한 것이 된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채권보유액인 5조 2천억 원을 합치는 경우 신규여유자금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 복지부문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금운용지침은 복지사업에 대한 수익률기준을 국고채권수익률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공시된 국채, 지방채, 특수채의 표면금리를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 발행채권의 표면금리가 3.8%(5년 만기 기준)로 국고채 3.5%, 국민주택 1종 3.0%(5년 만기), 통화안정증권 3.33%(1년 만기)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채권수익률이 낮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국공채 표면금리(2011년 9월 기준)

구분		표면금리(%)
국채	국고채-11-5 (5년)	3.5
	국민주택1종-11-09 (5년)	3.0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11-09 (1년)	3.33
	통화안정증권 11-09 (3개월)	3.26
비금융 특수채	한국장학재단 2011 (15년)	3.92
	한국장학재단 2011 (5년)	3.8

자료: KRX 홈페이지

복지의 개념을 교육복지까지 확대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특수채를 매입하는 것도 복지투자에 포함될 수 있다. 2011년 9월 기준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규모는 5조 2,900억 원이다.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5,9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채권의 11.15%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과 발행이자율 조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복지투자를 보편적인 주택복지까지 확대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채권보유액도 복지투자에 포함되어 복지투자규모는 5조 7,999억 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채 보유액 중 발행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인 경우를 합산하면 국민연금기금은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이 보다 커지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에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이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보다는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조달자의 역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복지욕구는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이러한 수요를 사업운용을 통해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복지사업을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